

● **병무청고시 제2020-1호**

2020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1년도 인원배정 고시

2020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1년도 인원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5월 25일

병무청장

1. 관련근거

- 「병역법」 제21조의2 및 제36조
- 「병역법 시행령」 제40조의2 및 제72조부터 제78조의2까지

2. 주요방침

가. '21년도 인력지원

(단위 : 명)

구 분	계	전문연구요원	산업기능요원	승선근무예비역
계	16,500	2,500	13,000	1,000
현역병 입영대상자	7,500	2,500	4,000	1,000
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(보충역)	9,000	-	9,000	-

- ※ 전문연구요원의 보충역 배정인원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
- ※ 산업기능요원은 보충역 배정인원(9,000명) 초과 시에도 모두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
- ※ 승선근무예비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만 배정

나. '20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'21년도 인원배정 주요 방침

【전문연구요원】

- '20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
  - '21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 선정
   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'21년 상반기 추가 선정
    - \* 선정제외 대상 : 「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」 제9조의 해당 업체
  - 선정 기준
    - 자연계 석사 이상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(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2인 이상)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으로서
      - \*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
      - \*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,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설연구소, 「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른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
    -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
    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
    -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자연계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 연구기관
    -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
    -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
    - 「방위사업법」에 따라 위촉된 연구기관
  - 추천권자가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의 연구기관은 선정우대

○ '21년도 인원배정

- '21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배정
  - \* 인원배정 제한 대상 : 지방청 복무관리 불합격 업체, 「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」 제19조의 인원배정 제한 업체 등
- 중소기업은 업체별 인원배정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 총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인정
  - \* 일부 업체 풀림 방지를 위해 업체별 채용한도 설정 예정
-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: 600명
  - \*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배정인원은 「병역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인원을 의미함
- 기타 연구기관(중견기업, 특영연구, 정부출연, 국공립, 방위산업 등)은 편입률, 업체 평가결과 등 반영 업체별 차등 배정(대기업은 인원배정에서 제외)
- 사회복지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보며, 필요인원을 추천권자에게 신청하지 않은 업체도 편입 가능
- ※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인원배정 받으려는 업체는 '21년 필요인원을 추천권자에게 신청(단, '20년 상반기 신규 선정된 업체는 기신청한 필요인원으로 같음)해야 하며, 미신청 업체는 '21년 편입 불가

【산업기능요원】

○ '20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

- '21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역지정업체(산업체) 선정 기준에 적합한 업체 중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 선정
  - 보충역만 배정 신청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'21년부터 연 2회 선정. 다만, '20년은 8월 조기 선정
  - \* 선정제외 대상 : 「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」 제11조의 해당 업체
- 선정 기준
  - 공업 분야는 사업자 및 공장을 등록한 중소·중견법인 업체로서,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(단,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와 취업협약(기업-학교-학생, 3자 협약)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), 제조·매출실적이 있고, 제조(사업)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
  - \*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(사업장) 신청 가능
  - 에너지산업 분야는 발전업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·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
  - 광업 분야는 광물(석탄은 제외)의 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업체, 선광·제련 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1만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
  - 건설업 분야는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
  - 수산업 분야는 어선(임차선박 포함)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
  - 해운업 분야는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
  - 방위산업체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

○ '21년도 인원배정

○ '21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배정

\* 인원배정 제한 대상 :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불합격 업체, 「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」 제19조의 인원배정 제한 업체 등

- 「병역법 시행령」 제85조제1항에 따른 당연전직자 중 잔여복무기간 6개월 미만인 사람을 채용한 업체는 인원배정 우대하고,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및 추천권자 추천등급 등을 고려하여 배정
- 보충역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업체별 배정인원으로 봄

○ 방위산업체 및 농어업 분야는 별도 배정

- 방위산업체는 기간산업체(중소기업) 인원배정 순위 적용
-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구분하여 배정(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전공자 위주 배정)
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별도 배정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(부모, 배우자, 자녀)이 해당하는 사람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(부 또는 모)이 해당하는 사람

○ 기간산업체의 경우

- 산학연계 협약에 의해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·중소기업기술사관·유니테크·영마이스터·일반고(직업계열학과)·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(졸업예정자 포함) 등은 아래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

\* 다만, '21년도 인원배정을 받은 업체로부터 반납받거나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회수한 배정인원은 인원배정 우선순위 관계없이 별도 재배정(10월경)

- 동일법인내 다수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 업체로만 배정
- 중견기업은 보충역만 배정

<중소기업 인원배정 순위>

순위	1순위	2순위	3순위	
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특성화고 졸업자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(기업-학교-학생, 3자 협약)자</li> <li>- 일·학습병행제, 도제식교육 참여자</li> </ul> </li> <li>○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·학습병행제, 도제식교육 참여자</li> </ul> </li> <li>○ 마이스터고·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</li> <li>○ 유니테크(Uni-Tech) 졸업자</li> <li>○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1순위 외)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</li> <li>○ 기술계 대안학교 졸업자</li> </ul>	○ 1,2순위 외	

- \*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: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춤반, 특허청의 발명·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,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
- \* 일·학습병행제, 도제식교육 참여자 : 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일학습병행, 도제식교육 참여자

\*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: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

\* 기술계 대안학교 :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 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인가한 학교(한국폴리텍다속고)

\* 2002년 출생자('21년 19세)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(2002년생 2순위 해당자로서 '20년 졸업이후 신청 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포함)은 1, 2순위 배정 후 잔여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3순위에 우선하여 배정

\* 일·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(이론교육)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('21년 중에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)

\*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·일반고(직업계열학과)·기술계대안학교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·일반고(직업계열학과)·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(대학학력자 제외)의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

(다만,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·일반고(직업계열학과)·기술계대안학교 졸업 후 업체(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포함)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,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(선취업·후진학)한 사람은 편입 가능)

\* 정보처리분야 배정자는 관련학과 전공 등 정보처리분야 편입대상에 해당되어야만 편입 가능

- 3순위 인원은 1·2순위 배정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배정

【승선근무예비역】

○ '21년도 인원배정

○ 대상업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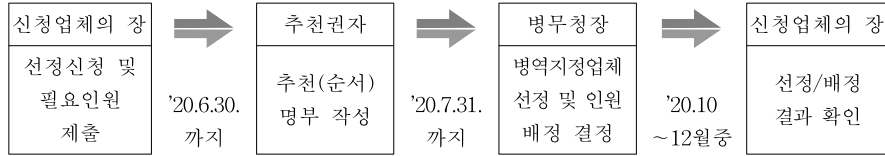
해운업체	수산업체
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보유·관리업체	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 보유·관리업체

\* 인원배정을 받으려는 업체는 필요인원을 '20년 6월말까지 추천권자에게 신청해야 함

○ 배정기준

- '21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를 대상으로 배정
- \* 인원배정 제한 대상 : 지방청 복무관리 불합격 업체, 「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」 제4조의2 인원배정 제한 업체 등
- \* 국가필수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업체 우선 인원배정
- \* 직무상 사망(실종)자 발생, 위법·부당행위 업체 등 복무관리 부실업체 인원배정 일부 제한
- 신규로 필요인원을 신청한 업체 중 '20년도에 직무상 사망(실종)자 발생업체는 인원배정 제한
- 수산업분야 근해어업체는 수산계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업체에 한하여 인원배정
- \* 최종학력이 수산계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졸업자인 경우에만 편입가능
- 반납되거나 이동근무 등으로 회수된 배정인원은 복무관리 실태 등 고려 재배정(4월, 6월, 9월, 11월, 12월)
- \*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(다만, '20년도에 직무상 사망(실종)자 발생, 위법·부당행위 업체 등 복무관리 부실업체는 재배정 제외)
- \* '21년 필요인원 신청업체 또는 지방병무청 관리업체에 한함

3.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



\* 보충역만 배정 신청한 기간산업체(중소·중견업체)는 '20년 8월중 선정, 이외 업체는 11월중 선정

4.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접수기관

가. 전문연구요원(자연계 연구기관)

분 야 별	접수기관	추천권자	
기업부설	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	
대 학	대학원	한국연구재단	교육부장관
	대학부설		
	기초과학	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	지역혁신	산업통상자원부	산업통상자원부장관
국·공립	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	
공공법인	정부출연	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	특정기관		
	공익법인		
	공공기관		
	의료연구		
방위산업	국방과학연구소	국방과학연구소장	

나. 산업기능요원(산업체)

분야별	업 종	접수기관	추천권자
공 업	철강,기계,전기, 전자,화학,섬유, 신발,생활용품, 통신기기,정보처리, 시멘트·요업	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중소기업) 한국중견기업연합회(중견기업)	중소벤처기업부장관(중소기업) 산업통상자원부장관(중견기업)
	의료의약	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제약바이오협회, 한국화장품협회	보건복지부장관
	식품음료	한국식품산업협회	식품의약품안전처장
	동물약품	한국동물약품협회	농림축산식품부장관
	농산물가공	한국식품산업협회	농림축산식품부장관
	수산물가공	시, 도	해양수산부장관
	임산물가공	산림청	산림청장
게임S/W제작, 영상게임기제작 애니메이션제작	한국콘텐츠진흥원	문화체육관광부장관	

분야별	업 종	접수기관	추천권자
해운·수산	해 운	한국선주협회,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, 한국해운조합	해양수산부장관
	수 산	한국원양산업협회, 수협중앙회	해양수산부장관
광 업	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중소기업)	중소벤처기업부(중소기업)	중소벤처기업부(중소기업)
	한국중견기업연합회(중견기업)	산업통상자원부(중견기업)	산업통상자원부(중견기업)
에 너 지	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중소기업)	중소벤처기업부(중소기업)	중소벤처기업부(중소기업)
	한국중견기업연합회(중견기업)	산업통상자원부(중견기업)	산업통상자원부(중견기업)
건 설	대한건설협회, 대한전문건설협회, 대한설비건설협회, 해외건설협회	국토교통부장관	국토교통부장관
방위산업체	한국방위산업진흥회	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	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

※ 해운·수산분야는 보충역만 인원배정

다. 승선근무예비역(해운·수산업체)

분야별	접수기관	추천기관
해운	한국선주협회,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, 한국해운조합	해양수산부장관
수산	한국원양산업협회, 수협중앙회	

5. 유의사항

-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은 인력지원 규모와 복무관리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신청한 모든 업체가 선정되거나 인원배정이 되는 것은 아님
- 우선 인원배정 대상이라도 전체 인력지원 규모에 따른 업체별 배정 상한인원 범위를 초과하거나 업체가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인원배정이 제한되는 경우 인원배정이 안 될 수 있음
- 기간산업체는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(사업장)이 신청 가능하므로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도 동일법인 내 다른 공장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음(다만, 현역병 입영대상자 인원배정은 동일법인 내 1개 업체에만 배정)

6. 향후 추진일정

-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 접수 : '20. 6. 1. ~ 6. 30.(접수부처·기관 별도공지)  
※ 보충역만 채용 희망하는 기간산업체(중소·중견업체)는 2021년부터 연 2회 선정  
(상반기 접수 1월, 선정 5월 / 하반기 접수 6월, 선정 11월)
- 병역지정업체 선정/인원배정 실태조사 : '20년 9 ~ 10월  
(단, 산업기능요원 1차 선정제외 업체는 실태조사 전 사전 공지)
- 병역지정업체 선정 결과 공지 : '20년 10 ~ 11월
  - 전문연구요원 : 10 ~ 11월
  - 산업기능요원 : 보충역만 배정 신청한 업체 8월, 이외 업체 11월
- 인원배정 결과 공지 : '20년 11 ~ 12월
  - 전문연구요원/승선근무예비역 : 11 ~ 12월
  - 산업기능요원 : 12월